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 - 1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정주환경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과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최적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제3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
- 회의 소집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제8조)

○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3. 4(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3,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붙임자료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창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0
----------	-----

발의연월일 : 2016. 2. 24.

발의자 : 정 창 일 의원

(찬성자 7인)

☐ 제안이유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정주환경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과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최적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제3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
- 회의 소집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제8조)
-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정주환경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정주환경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전략,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각종 개발사업의 방향 설정, 개발계획의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첨단산업 및 서비스산업 분야 투자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자문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국내외 기업·경제·행정 분야 전문가 및 연구기관 근무경력자

3.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기업유치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기획정책 관련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

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위원 참석수당 지급에 따라 연 5백만원 범위내에서 비용발생
 - 참석수당 100,000원 × 15명 × 2회(年) = 3,000,000원
 - 행사운영비 1,000,000원 × 2회(年) = 2,00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4. 작성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장 이건우